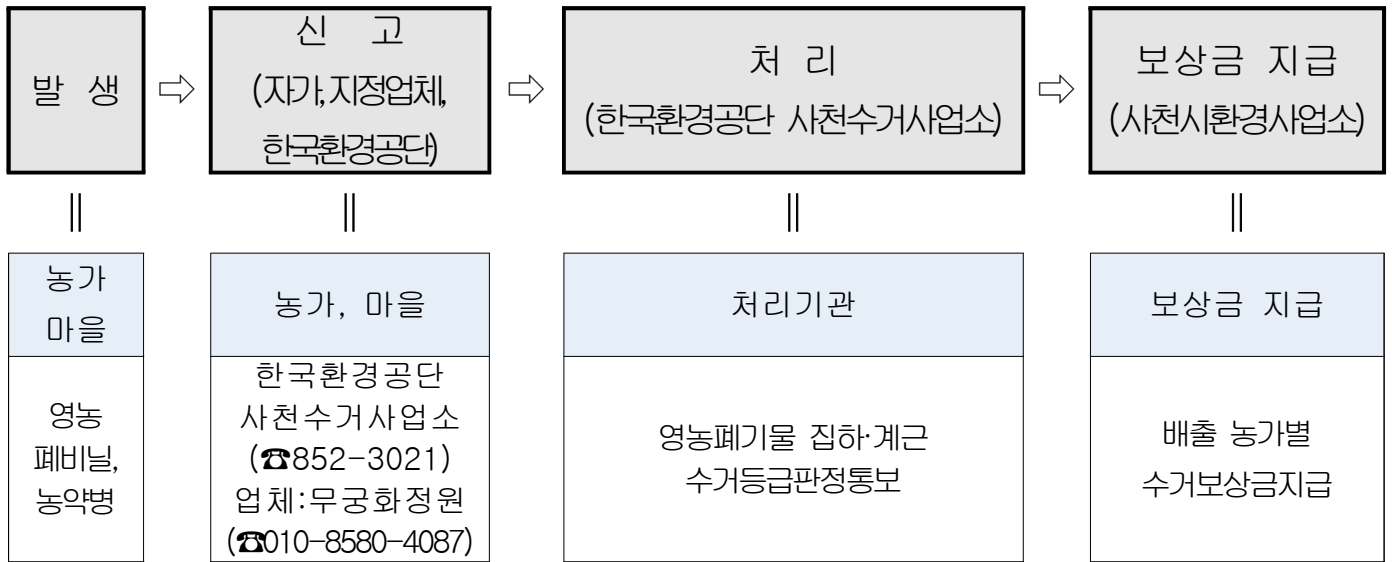


영농폐기물(폐비닐 등) 수거신고 및 처리안내

환경부 “농촌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(2012.5.)” 제정 시행에 따라,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·매립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

□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업무 흐름도



※영농폐비닐 등 보상금 지급단가 : A급-140-원/kg, B급-100원/kg
(환경부 자원재활용과-719(2016.3.11.)호에 의거 '16.04.01일부터 시행')

□ 수거처리 안내

- 1톤 미만시 ⇒ 자가 집하장 배출
- 1톤이상 시 업체(~~무궁화정원~~) 및 한국환경공단(사천수거사업소) 대행

□ 참고자료(수거등급 판정기준-폐비닐)

등 급	폐비닐상태	보상금 지급 단가
A급	①비닐하우스전용으로써, 이물질이 제거되고, 재질별·색상별 선별된 상태 ②폐비닐표면 및 속에 수분함유가 거의 없는 상태 ③별도 선별 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	140원/kg
B급	①이물질이 일부 제거된 상태, 재질별·색상별 미 선별된 상태 ②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 접촉 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③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	100원/kg